

국가대표 선발규정

2014. 09. 23. 제정

2014. 11. 05. 개정

2017. 05. 13.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대표의 선발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이루 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국가대표는 국가대표선수 및 국가대표지도자를 말한다.

② 국가대표선수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의2호에 따른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또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이하 “회원종목단체”라 한다)가 국제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국가대표선수에는 “체육회 국가대표 강화훈련”(이하 “강화훈련”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④ 국가대표지도자는 국가대표 훈련기간 동안 국가대표선수를 지도·관리하기 위해 체육회 또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선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회원종목단체에서 실시하는 종목별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않는 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4조(국가대표 선발 및 승인)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선수와 지도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에서 선발하되,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이 추천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받으면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② 강화훈련에 참여하지 않고 회원종목 단체에 의하여 종목별 국제대회에 파견되는 선수와 지도자는 종목별 선발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종목별 국가대표의 자격을 갖는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4. 선수 또는 지도자가 폭력행위로 3년 미만의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3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5. 성추행, 성희롱 등 성과 관련된 범죄행위로 선수 또는 지도자가 자격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부터 자격정지 기간을 가산하여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사람(다만, 5년 이상의 자격정지를 받은 사람은 영구히 국가

대표가 될 수 없다)

6. 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에서 승부조작, 불공정 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국가대표 훈련비 횡령)와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행위로 징계를 받은 사람
7.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6조(성실의무 및 품위유지) 국가대표는 국가를 대표하는 신분으로서 스스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삼가며, 사회적 책임감과 도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본회는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경기력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및 선수 선발에 관한 사항
2. 강화훈련의 실시, 국가대표에 대한 지도, 감독 및 평가분석에 관한 사항
3. 국제경기대회 국가대표 참가에 관한 사항
4. 선발전 세부운영 세칙 제, 개정 및 실행
5. 기타 국가대표 경기력향상과 관련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약간 명
3. 위원 5명 이상 9명 이하(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 ② 위원회에는 국가대표선수 출신 1명, 지도자 1명, 등록팀 관계자 1명, 시·도회 원단체 임원 1명, 비경기인 1명, 여성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종목별 특성에 따라 세부종목 또는 남녀를 구분하여 위원회를 별도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각각의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요건) ①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다.

- ② 회장과 친족인 사람(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③ 해당 종목의 등록선수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지도자 및 선수 선발기준 확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다만, 선수의 부상, 경기력 부진 등에 따른 일부 선수의 교체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종목별 특성의 반영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회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회원종목단체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 ② 위원은 2회의 임기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으나, 국제스포츠 기구의 임원이거나, 국제기구 진출 시 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국가대표지도자의 선발) ① 국가대표 지도자의 선발은 공개선발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회 의결 후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② 국가대표지도자를 임용 또는 재임용할 때에는 해당 지도자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평가와 추천을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국가대표지도자의 임기 및 역할) ① 국가대표지도자의 신분보장과 안정적인 선수 관리를 위해 1년 이상의 임기(계약기간)를 보장하여야 한다. 단, 훈련소집 기간이 종료가 되는 경우와 국제대회별 지도자를 선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국가대표 감독은 코치 및 선수 선발 선임 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감독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 국가대표지도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대표선수의 훈련 및 관리
2. 훈련계획서 작성 및 선수별 훈련성과 평가
3. 훈련참가 국가대표선수 선발 참여
4. 경기력 부진선수 교체 건의
5. 국가대표 훈련참가자의 해외전지훈련 및 국제대회 파견 시 인솔
6. 각종 국제대회 참가보고서 작성 및 분석결과 보고
7. 선수의 합숙생활에 대한 지도, 감독
8. 기타 경기력향상과 관련되는 사항

제15조(강화훈련 참가 지도자 선발기준)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지도자는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하여야 하고, 감독은 5년 이상, 코치는 2년 이상의 해당 종목 지도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2급 이상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올림픽메달리스트는 경력과 상관없이 회원종목단체 위원회 및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대표 지도자로 선임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육관련학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 종목 지도경력 또는 국가대표 선수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은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③ 트레이너는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 및 지도경력을 반드시 요하지는 않으나,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선발 시 우대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선발기준 적용에 있어 외국 국적 지도자 선발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6조(국가대표선수 선발) ① 국가대표선수는 본회가 사전에 정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및 요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함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내용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본회 국가대표선수 선발 기준은 선발일 3개월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여 해당 회원종목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종목 국제연맹의 대회 관련 참가요건의 공지가 늦어지는 경우에 한해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이때 선발기준 공지 지역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 대상이 되는 선수의 지도자 등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위원회 참석위원은 회의록에 자필서명을 하여야 한다.

제17조(훈련 참가선수의 선발) ①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하고, 해당 회원종목단체장의 추천으로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제1항 외의 국가대표선수는 해당 회원종목단체가 사전에 정한 선발기준 및 일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발하고, 해당 회원종목단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원종목단체 훈련에 참가할 수 있다.

제18조(강화훈련 참가선수의 선발기준) ① 해당연도 강화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대표선수의 선발은 최소 연 1회 이상의 정기선발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부상, 경기력 부진 등의 사유로 발생한 결원에 따른 선수 교체 시 감독의 추천으로 위원회에서 선발할 수 있으나, 선발전 최종성적을 기준으로 상위성적 선수를 우선하여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국가대표로 선발된 선수를 소속팀으로부터 차출할 경우 해당 선수의 원소속팀과 반드시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원소속팀이 불응 시, 위원회에서 국가대표자격을 정지하고 다른 선수로 선발, 변경할 수 있다.

⑤ 선발기준에는 선발방식, 선발일정, 전형선발의 요건, 비율 및 기준 등 구체적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사전에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⑥ 선수선발은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선발전 성적, 연간 대회성적에 기반한 순위 등)를 근거로 선발하여야 한다.

⑦ 전형 선발 인원은 총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단체종목의 경우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

⑧ 추천된 선수는 추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대회성적, 향상도, 위원회 회의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국가대표 선발 검증 강화) ① 강화훈련 참가 및 국제대회 파견 선수 명단은 확정 즉시 선발사유를 적시하여 본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명단 공개 후 이의신청 기간을 두도록 하고, 이의신청 내용은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불공정 행위) ① 국가대표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부정선발, 담합, 금품수수 등)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강화훈련에서 제외한다.

② 기준 미달자 등 부정 선발된 선수는 즉시 강화훈련에서 제외하고, 해당 종목의 훈련인원은 해당 인원만큼 감원한다.

제21조(국가대표선발규정 제·개정) ① 본회는 대한체육회 관련 규정에 따라 6개

월 이내에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② 본회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을 개정한 경우에는 그 즉시 개정한 규정을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종목단체는 국가대표 선발 규정을 개정하고 1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개정 후 시행에 있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1년 이내에 개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자료의 보관) 국가대표 선발기준, 과정, 결과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제기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선발과 관련한 근거자료(선발결과 기록지, 분석지, 및 회의록 등)는 최소 5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훈련의 관리) 국가대표 훈련과 관련된 사항은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훈련 관리지침’을 적용하여 시행한다.

부 칙(2014. 9. 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5조(결격사유)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후 발생한 행위로 형별 또는 징계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국가대표선수 선발)의 개정내용은 2015년도에 한하여 선발전 일정과 규정 개정 시일로 인하여 부득이 2개월 전에 확정하여 처리한다.

부 칙(2014.11.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① 종전의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경기력향상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경기력향상위원회로 보며, 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협회 회장이 2015년도 정기이사회 승인을 얻어 새로 경기력향상위원회를 구성할 때까지로 한다.

② 이 규정 제정과 동시에 경기력향상위원회 규정은 폐기된다.

부칙(2017. 5.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구)대한정구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